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117호, 2025.11.11.)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 
1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인력·시설 등에 관한 사항, 2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,  
3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

또한, 「의료법」이 개정(법률 제21111호, 2025.11.11.)으로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종사자 기준에 한의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기준)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(이하 “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”이라 한다)의 지정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.

제12조의3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수립·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1.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운영계획서
  2.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
  3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5의2의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, 급성기 집중치료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-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면,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

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.

⑨ 제5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
⑩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,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.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2조의4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심사평가원”이라 한다)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
2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한다.

제12조의5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) 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제12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

납해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2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서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.

제12조의6(평가업무 등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.

1.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
2.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업무
3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관한 업무
4.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 심의의 지원에 관한 업무
5.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
6. 제12조의3제10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, 운영 현황 등의 정

기 평가에 관한 업무

7.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업무

8. 그 밖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4호의2 서식부터 제4호의4 서식까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기준(제12조의3 관련)

### 1. 인력 기준

- 가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(이하 “집중치료실”이라 함) 입원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두되,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.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.5명으로 본다.
- 나.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.5명당 간호사 1명, 종합병원의 경우 2.0명당 1명,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2.5명당 1명을 두되,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.
- 다.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40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을 두되,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. 이 경우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2]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여야 하며,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.5명으로 본다.
- 라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당직의사 근무 체계와 간호사의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료기관 내에 당직의사를 1명 이상 두며,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간호사 1명당 입원병상 100개 이하로 둔다.
- 마. 24시간 응급입원 등이 필요한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연계·이송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입원·퇴원(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포함)에 관한 사항,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여 등 관련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둔다. 이 경우 다른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다.

### 2. 시설 기준

- 가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집중치료실과 보호실을 갖추어야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른 시설은 각각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집중치료실은 집중치료실이 아닌 병실과 구분되어야 한다. 보호실은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, 응급입원환자의 수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.

#### 1) 집중치료실

| 의료기관 종별 | 기준 |    |
|---------|----|----|
|         | 최소 | 최대 |

| 의료기관 종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 | 최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급종합병원,<br>권역정신응급센터로 지정된<br>종합병원 | 4병상 | 폐쇄병동 허가병상 수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하되,<br>급성기 집중치료실 외 병상 보유 권고 |
| 종합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폐쇄병동 허가병상 수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,<br>50개까지 운영 가능           |
| 병원, 정신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폐쇄병동 허가병상 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되,<br>50개까지 운영 가능           |

## 2) 집중치료실 내 응급입원용 병상

| 의료기관 종별  | 기준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급종합병원   | 집중치료실 병상 수의 100분의 10 이상 |
| 종합병원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병원, 정신병원 | 집중치료실 병상 수의 100분의 20 이상 |

## 3) 보호실

| 집중치료실 병상 수 | 기준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|
| 10병상 이상    | 보호실 2실 이상 |
| 10병상 미만    | 보호실 1실 이상 |

## 3. 의료의 질

- 가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에 따른 공휴일,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응급입원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나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급성기병원 인증 또는 정신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다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중 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항목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중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등급, 종합병원의 경우 2등급 이내,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등급 이내의 평가 결과를 달성하여야 한다.
- 라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퇴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치료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

| 접수번호       | 접수일시        | 처리기간 | 180일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신청<br>요양기관 | 요양기관명       |      | 요양기관기호     |      |
|            | 대표자(법인명)    |      | 생년월일(법인번호) |      |
|            | 소재지(우편번호: ) |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| 담당자         | 성명   | 부서명        | 직책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| 전화번호 |            | 팩스번호 |
| 전자우편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|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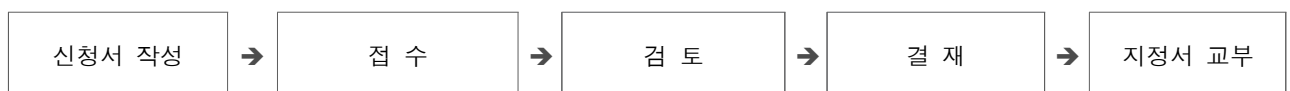
신청기관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 1부<br>2.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<br>3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1부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### 처리절차



신청기관

처리기관: 보건복지부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#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

(요양기관명(요양기관기호): )

1. 운영 목적

2. 병원 경영 특성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3. 운영 계획 | 가.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방안    |
|          | 나. 의료인력 등 유지 방안     |
|          | 다. 대상 환자 운영계획 등     |
|          | 라. 입원환자 사회복귀 운영계획 등 |

4. 참고자료: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현황 자료 등

제 호

##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

1. 요양기관기호:
2. 요양기관명:
3. 대표자(법인명): 생년월일(법인번호):
4. 소재지:
5. 지정 유효기간: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 기관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

※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생년월일에 각각 법인명과 법인번호를 기재  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

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(제11조제2항 관련)

| 구분                 | 정신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원급 이상의<br>의료기관에 설치된<br>정신건강의학과 | 정신과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신건강<br>의학과<br>전문의 |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,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.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.5명으로 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을 두되,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.5명으로 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간 호 사              |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,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.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신병원과 같음. 다만,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. |
| 정신건강<br>전문요원       |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,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.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.5명으로 본다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안<br>전담인력         |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둔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진료과목 1개당 의사(「의료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외과 진료과목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한의사를, 동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) 1명을 둔다.

비 고

1.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.
2. 낮병동 환자(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고 귀가하는 환자를 말한다)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12조의2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<br>치료병원 지정 기준) 법 제19조<br>의2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<br>환 집중치료병원(이하 “급성기<br>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”이라<br>한다)의 지정 기준은 별표 5의2<br>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12조의2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<br>치료병원 지정 기준) 법 제19조<br>의2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<br>환 집중치료병원(이하 “급성기<br>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”이라<br>한다)의 지정 기준은 별표 5의2<br>와 같다.<br><br>제12조의3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<br>치료병원의 지정 등) ① 보건복<br>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<br>중치료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<br>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<br>미리 지정계획을 수립·공고하<br>여야 한다. 다만 보건복지부장<br>관이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<br>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<br>단축할 수 있다. |

- 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1.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운영계획서
  2.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
  3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5

의2의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, 급성기 집중치료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

<신 설>

원을 지정하면, 별지 제4호의4  
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  
료병원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  
에 발급하여야 한다.

⑨ 제5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  
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의 유효기  
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 
3년으로 한다.

⑩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  
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 
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 
여부,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 
있다.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  
정한 사항 외에 급성기 정신질  
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에  
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 
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2조의4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  
치료병원운영위원회) ① 보건복  
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 
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  
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  
험심사평가원(이하 “심사평가  
원”이라 한다)에 급성기 정신질  
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(이

<신 설>

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

2.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한다.

제12조의5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) 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제12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

<신 설>

간 이내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2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서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.

제12조의6(평가업무 등의 위탁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.

1.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
2.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및 서류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업무
3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대 평가에 관한 업무
4.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 심의의 지원에 관한 업무

무

5.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

6. 제12조의3제10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, 운영 현황 등의 정기 평가에 관한 업무

7.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업무

8. 그 밖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44) 202 - 3866, 3863 |